

3-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지원 대상

〈법인세·소득세〉

-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부터 적용 배제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 사내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일 것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재기중소기업의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아래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 ① 중소기업일 것
- ②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 유형구분 | 확인 요건 | 확인 기관 |
|------|--|------------------------------|
| 벤처투자 | (1)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2)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 연구개발 |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2)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3) 사업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혁신성장 |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총7개 기관 |

* www.smes.go.kr/venturein 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 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 |
|------------------------|------|----------|-----------|------------------------------|-----|------------|
| 업종 | 세부사항 | 신성장 서비스업 | 업종 및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매출액 등 |
| ①광업 | | - | (좌동) | 광업 | B | 1,000억원 이하 |
| ②제조업 | | - | (좌동)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1,500억원 이하 |
| | | | | 가족·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 | |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 |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 |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 | | | 가구 제조업 | C32 | |
| | | | | 식품 제조업 | C10 | 1,000억원 이하 |
| | | | | 담배 제조업 | C12 | |
| | |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 |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 | | | | 코르크·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 |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
| | | |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 |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000억원 이하 |
| | |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 | | |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원 이하 |
| |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00억원 이하 | | |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 | |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 |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 | |
| ③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 | - | (좌동)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 E | 800억원 이하 |
| ④건설업 | | - | (좌동) | 건설업 | F | 1,000억원 이하 |
| ⑤통신판매업 | | - | 해당사항 없음 | 도매 및 소매업 | G | 1,000억원 이하 |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 |
|-------------------------------|---|----------|--|---------------------|----|----------|
| 업종 | 세부사항 | 신성장 서비스업 | 업종 및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매출액 등 |
| ⑥물류산업 | 육상수상항공운송업 및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 O | (좌동) | 운수업 | H | 800억원 이하 |
|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 | | 임대업 | | |
| ⑦음식점업 | | - | 해당사항 없음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 ⑧정보통신업 |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기반 암호화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 | O | (좌동)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800억원 이하 |
| ⑨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소액해외송금업무 | - | 해당사항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 K | 400억원 이하 |
| ⑩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 건축사 제외 | O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600억원 이하 |
| ⑪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O | (좌동)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600억원 이하 |
| ⑫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좌동)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600억원 이하 |
| ⑬사업 지원 서비스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 | (좌동)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600억원 이하 |
| ⑭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해당사항 없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600억원 이하 |
| ⑮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오락서비스,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 그 외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 O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스포츠 및 여가관련업은 해당없음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600억원 이하 |
| ⑯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 | - | 해당사항 없음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600억원 이하 |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 |
|---|-----------------------------|----------|---------------------|--|------------------|----------|
| 업종 | 세부사항 | 신성장 서비스업 | 업종 및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매출액 등 |
| ⑰이용 및 미용업 | | - | 해당사항 없음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600억원 이하 |
| ⑱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운영업 | | O | (좌동) | 교육 서비스업 | P | 400억원 이하 |
| ⑲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형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형음식점업 제외) |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 O | (좌동)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 O | 자동차야영장업은 해당사항 없음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 | 관광유람선업 (일반유람선, 크루즈) | O | 해당사항 없음 | 운수업 | H | 800억원 이하 |
| | 관광공연장업 | O | 해당사항 없음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600억원 이하 |
|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O | (좌동)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600억원 이하 |
| |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 O | (좌동)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600억원 이하 |
| ⑳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 - | 해당사항 없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600억원 이하 |
| ㉑전사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사산업 | | O | (좌동)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대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 | N (N76 제외) | 600억원 이하 |
| ㉒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O | (좌동)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600억원 이하 |
| ㉓전문디자인업 | | O | (좌동)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600억원 이하 |
| ㉔광고업 | 광고업 중 문안· 도안·설계 등 작성업 | O | (좌동)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600억원 이하 |
| ㉕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O | (좌동)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800억원 이하 |
| ㉖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 O | (좌동)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800억원 이하 |
| ㉗출판업 | | O | (좌동)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800억원 이하 |
| ㉘연구개발업 | | O | (좌동)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600억원 이하 |

▶ 지원 내용

〈법인세·소득세〉

-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5년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단,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 구 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¹⁷⁾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외 지역 감면기간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
|---|-----------------|---------------------------------------|--|--------------------------------------|
| 청년창업중소기업 ^① | | 창업일부 5년간 100% | 창업일부 5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② | 연 수입 8,000만원 이하 | 창업일부 5년간 100% | 창업일부 5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 | 연 수입 8,000만원 초과 | 창업일부 5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 중소기업 ^③ | 신성장 서비스업 | 연수입 8,000만원 이하 | 창업일부 5년간 100%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 | | 연 수입 8,000만원 초과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단, 위①, ②적용받은 경우 제외 | |
| | 기타 업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단, 위①, ②적용받은 경우 제외 | | |
|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④ | 신성장 서비스업 | 연수입 8,000만원 이하 | 창업일부 5년간 100%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 | | 연 수입 8,000만원 초과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
| | 기타 업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5년간 50% | |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⑤ | | 사업개시일부 5년간 50% |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 청년창업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요건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7)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11장 11-3' 참조

* 신성장서비스업

- (1)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5) 조특법령 제5조⑦항에 따른 물류산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예선업 등)
-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조특법령 제5조⑩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대행업, 전시광고업 등)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단,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 한함
-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이어야 함
- (3)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0명
- (4)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함

* 업종별최소고용인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 10명
(그 외의 업종) : 5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다음의 고효율제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 <취득세>

-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 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 구 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
| 청년 창업중소기업(①) | 창업일부터 5년간 75% | 해당사항 없음 |
| 창업중소기업(②) | 창업일부터 4년간 75% | 해당사항 없음 |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창업벤처중소기업(③)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75% | |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④)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간 75% |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⑤) |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 75% |
| | 기타 | 75%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단,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재산세>

-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

| 구 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
| 창업중소기업(①) |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 ①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②) | |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③) |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 100% | |
| | 기타 | 50% |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경감

▶ <등록면허세>

-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의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 구 분 |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율 |
|--------|--|
| 창업중소기업 | 100%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에 따른 등기 포함) |
| 예비벤처기업 | 예비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할 경우 100% |

- 위의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대상(단, 재산세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법인세·소득세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취득세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 예비벤처기업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 법령

-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적용 사례

- 기업현황(A법인-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연매출 8,000원 초과, 신성장 서비스업)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22.1.1

② 2022년 과세표준 : 1,000,000,000

③ 2022년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800,000,000 \times 20\% = 180,000,000$

- 창업일부터 3년간 A법인의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① 2022년 산출세액 : 180,000,000

② 2022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 $180,000,000 \times 75\% = 135,000,000$

③ 2022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135,000,000 = 45,000,000$

- 창업일 이후 4년부터 2년간 A법인의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과세표준 동일 가정)

① 2025년 산출세액 : 180,000,000

② 2025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 $180,000,000 \times 50\% = 90,000,000$

③ 2025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90,000,000 = 90,000,000$

▶ 질문과 답변



질문 1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개인기업의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¹⁸⁾



세무사 답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2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¹⁹⁾



세무사 답변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²⁰⁾



세무사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8) 사전-2018-법령해석소독-0717, 2018.12.10
 19) 법인-2498, 2008.09.17.
 20)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1

**질문 4**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20년 음식점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모르고 적용하지 않았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²¹⁾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창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따라 종합소득세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누락된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이 출자를 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까요?

**세무사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²²⁾

**질문 6**

갑(甲)법인이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²³⁾

21) 국세청상담사례 2016.05.19

22) 법인-306, 2011.4.26.

23) 법인-1124, 2009.10.13.

질문 7 청년창업의 연령 계산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조특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창업 당시 연령이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의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혹은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34세 이하이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여야 하는바 산업기능요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감하는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²⁴⁾

질문 8 202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사업장을 상속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020년 식품제조업을 개업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잔존기간에 대해 제가 승계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²⁵⁾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사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18년 중에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을 창업하였습니다. 나사장은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에도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개선 아이디어를 연구하여 2022년에는 기존 도매업에서 취급하던 상품보다 품질과 성능이 개선된 제품 생산하는 제조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사장은 납품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창업당시부터 영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후 2년이 지난 후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도매)에 다른 업종(제조)를 추가하여 제조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²⁶⁾

24) 조심2021중6680, 2022.02.11
 25) 서면-2015, 2016.03.18
 26) 서면법규-731, 2014.07.11

또한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합니다.²⁷⁾

창업일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여야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27) 사전법령소득-64, 2016.06.20